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81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백혜련·김영환·박상혁

한준호 • 남인순 • 김기표

박지원 • 박희승 • 이원택

강선우 · 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기의 건강은 평생 건강을 이루는 기반으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맞춰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상호 독립적이면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 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아 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춰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다.

제55조의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 건의료를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2.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 3.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 4. 취약계층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 시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범위·방법·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	②
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u>발전계획</u>
<u>8.·9.</u> (생 략)	<u>9.•10.</u>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55조의2(소아・청소년 보건의
	료체계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
	<u>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u>
	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를 적
	절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소아
	·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u>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 야 한다.
- 1. 소아·청소년의 보건의료서 비스 이용 현황
- 2.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 료서비스 공급 현황
- 3.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 신적 특성에 따른 보건의료서 비스 지원 현황
- 4. 취약계층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현황
- 5. 그 밖에 소아·청소년 보건 의료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실시 및 결과 공표에 활용하기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제3항에 따 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료제공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실 시 및 결과 공표의 범위·방법 ·절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